채권채무이전의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

최 덕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공화국민법은 채권채무의 이전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넘겨주고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줌으로써 채권의 안 전한 실현과 함께 민사거래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공화국민법 제77조에서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이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는 조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채권채무의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존재하던 민사법률관계당사자의 변화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공화국민법은 민사관계의 본성적요구와 당사자들의 리해관계 에 기초하여 채권채무의 이전사유와 조건,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과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규제하고있다.

채권채무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일련의 경우법이 정한 사유에 기초하여서도 이루어질수 있다.

채권채무의 이전이 법에 직접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전부가 그 대로 이전되며 그에 따르는 제한조건도 특별히 설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실례로서 상속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이전을 들수 있다.

공화국상속법에 따라 상속권자로 나서는자는 사망자가 생전에 결속하지 못한 채권이나 채무의 상태를 그대로 넘겨받게 되며 따라서 상속권자는 사망자를 대신하여 해당 채권이나 채무의 당사자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법에 기초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채권 채무의 이전은 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되여야 해당한 법적효력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채권 채무의 이전이 본인들에게는 물론 해당 채권채무관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다른 당사 자들의 리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공화국민법은 채권채무의 이전계약이 당사자들중 어느 일방의 리익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극복하고 전반적경제거래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부터 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채무가 이전될수 있는 조건과 그 법적효력을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여기에서 계약에 기초한 채권의 이전을 일명 채권의 양도라고 말한다.

공화국민법은 무엇보다먼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채권이 양도될수 있는 조건 과 그 법적효력 및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는 채권양도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유효의 법적효력을 발생시킨다.

우선 채권양도는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채권양도는 이전시키려는 채권의 내용이 법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며 그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채권양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형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조건, 당사자에 관한 조건, 의사표시에 관한 조건, 형식에 관한 조건 등에 위반되는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될수 있다.

그러나 례외적으로 채권이 증권화되었을 경우의 채권양도에 한해서는 민사법률행위의 일부 개별적인 유효조건이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다. 무역거래활동에서 광범히 활용되고있는 수형증권과 관련하여 법은 일단 수형증권이 발행되여 거래되는 이상 그것이 증권양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양도되였는가에는 관계없이 해당 증권양도사실에 유효의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수형증권의 발행과 그를 통한 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적으로 증권발행행위는 그의 원인에 유효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무인행위로 인정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증권발행자(채무자)는 상대방당사자의 증권소지상태만 확인되면 그가 원래의 채권자가 아니라 하여도 증권에 밝혀진 수량만큼 채무를 무조건 리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증권화된 채권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적조건에만 부합되면 법적으로 유효한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채권양도는 그 실현이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 가능한것이여야 한다.

채권양도는 그 실현이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 가능한것이여야 하며 설사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부합되게 설정된 채권인 경우에도 직접 법이나 계약에서 그 이전을 금지시켰다면 그것은 양도불가능한 채권으로 된다.

공화국민법에 의하면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계획적계약에 기초하여 설정된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양도가 허용될수 없으며 대외적인 무역관계에서 국가의 검토비준절차에 따라 설정된 계약채권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자의대로 양도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절차에 따라 채권의 양도를 검토비준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유효로 인정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양료청구권과 같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분과 뗼수없이 련관된 채권도 양도할수 없으며 이밖에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할 때 채권양도의 완전한 금지 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채권양도의 금지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채권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양도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법적효력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에 따라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리행할데 대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여야만 발생한다.

법적효력이 발생한 채권양도계약은 다음과 같은 법적효과를 일으킨다.

우선 채권이 원채권자로부터 새로운 채권자에게로 넘어간다. 즉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내용이 새로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계약에 기초한 채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채권의 전부를 포괄할수도 있고 그 일부만을 포괄할수도 있다.

채권의 전부양도는 원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만 일부양도는 원채권자의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의 전부양도에서는 원채권자의 법적지위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대로 계승되게 되지만 채권의 일부양도에서는 원채권자의 법적지위 가 양도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채권이 양도될 때 원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킬수는 있어도 원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현존하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의 법적지위만을 변경시키는것을 내용으로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양도는 원채권채무관계의 내용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게 되며 결국 채무자는 원래의 채무와 같은 내용의채무를 새로운 채권자에게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니게 된다.

채권이 양도될 때 원채권자는 새로운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충분히 행사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채권의 적법성을 담보할 의무도 지닌다. 따라서 원채권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해당한 증권을 넘겨주는것과 함께 채무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등 채권실현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채권이 양도될 때 주되는 권리가 넘어가면 그에 종속되는 권리도 넘어간다.

그것은 주되는 권리와 종속되는 권리는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된 권리로서 종속되는 권리가 주되는 권리의 존재여부에 전적으로 의거하기때문이다.

실례로 전당채권이 양도되면 그로부터 얻을수 있는 수득물에 대한 취득권도 함께 넘 어간다.

또한 채권의 양도는 그것을 양도하고 양도받은 당사자들사이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도 해당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대로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 원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고있던 채무리행항변권(동시리행항변권이나 시효경과항변권 등)은 채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법적효과가 미친다. 그것은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어도 채무자의 법적지위에는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때문이다.

공화국민법은 다음으로 채무의 이전조건과 그 법적효력 및 효과에 대하여서도 규제 하고있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한 채무의 이전은 채권의 양도조건과 비교적 같다고 볼수 있다. 즉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관한 요구와 그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요구조건의 측면에서는 채무의 이전조건과 채권의 양도조건이 비슷하다.

그러나 공화국민법에 의하면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사이의 채무이전계약은 채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유효의 법적효력을 일으키게 된다.

공화국민법 제77조에서는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받아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당 조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채권이전사실에 대한 채권자의 통지의무의 내용은 다만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범위에 국한되지만 채무이전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통지의무의 내용은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만일 이러한 법적요구를 어기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면 그러한 이전행위는 법적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원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의 동의밑에서 자기의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시켜야 한다.

우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게 이루어진 채무이전계약은 다음과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 시킨다.

우선 원채무자의 채무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넘어간다.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원채무자의 채무리행의무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넘어갈 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채무전부가 이전될수도 있고 일부만이 이전될수도 있다. 채무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채무는 전부 소멸되지만 그 일부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한 원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의 일부가 이전될 때 원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는 각기 자기에게 해당한 채무를 다같이 리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의 이전도 원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 하며 다만 원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사이의 법적지위에서만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던 채무리행항변권도 새로운 채무자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던 채무리행항변권이 새로운 채무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것은 그것이 채무자의 법적지위로부터 응당 설정되고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맞비기기를 주장할수 있는 권리(상쇄권)는 이전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쇄권이 본질에 있어서 원채무자의 채무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설정된 권리가 아니라 그와는 별도의 사실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독자적인 권리이기때문이다.

또한 채무가 이전되면 원채무는 물론 그에 종속되는 채무도 이전된다.

실례로 사회주의적법인들이 당사자로 나서는 일반대부관계에서 대부당사자의 원금반 환채무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리자반환의무도 함께 이전된다.

여기에서 류의할것은 원채무자의 채무리행과 관련한 보증관계가 설정된 경우 그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의무나 담보제공의무는 채무이전사실에 기초하여 저절로 이전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것은 채무의 이전이 원채무자의 채무리행에 한해서만 설정된 보증의무를 새로운 채무자에게 그대로 이전시키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채무리행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이나 담보제공은 개별적채무자의 신용과 지불능력 또는 담보제공자와의 특별한 관계 같은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다.

따라서 원채무자의 채무리행에 대한 보증의무의 이전은 보증인의 동의나 보증인과 새로운 채무자사이의 보증계약이 다시 설정되는 조건에서만 인정될수 있다.

채권채무의 이전에 관한 문제는 현시기 사회주의적민사관계에서 최대한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법률적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채권채무의 이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 주의경제관계에 대한 법률적연구와 규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 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